

정보화 운영 규정

제정 2025. 7. 1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정보화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보화: 정보를 수집·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·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교육·연구·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.
2. 정보시스템: 정보자원을 사용하여 정보의 수집, 가공, 분석, 검색 등의 처리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.
3. 개발: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개발하거나 전면적인 수정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말한다.
4. 운영: 정보시스템의 개발완료 후 유지보수를 제외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말한다.
5. 정보화부서: 정보시스템을 기획·개발·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.
6. 계획부서: 정보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부서(학과)를 말한다.
7. 주관부서: 정보시스템에서 해당업무의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주관하는 부서(학과)를 말한다.

제 3 조(조직 및 업무분장) ① 정보화운영과 관련한 조직 및 업무분장은 대학 직제 규정 제8조제7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다.

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조직 및 업무분장에 대한 주요사항은 학술정보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에 따른다.

제 4 조(정보화 세칙 및 내규)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행세칙 및 지침은 별도로 둘 수 있다.

제 2 장 시 스템 개 발

제 5 조(시스템개발 의뢰) 계획부서에서 신규 개발이 필요하거나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개발이 필요한 경우,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정보화부서에 시스템개발을 의뢰한다.

제 6 조(시스템개발 절차) 시스템개발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검토 : 현재 업무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사항을 파악한 후,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. 이 과정에서 하드웨어, 네트워크, 데이터베이스 등 필수적인 인프라 환경을 함께 검토한다.
2. 개발 :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설계를 진행한다. 설계가 완료되면 실제 개발을 진행하고, 이후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실시한다.
3. 완료 : 개발이 완료되면 문서화 작업을 진행하여 시스템의 개발 과정과 결과를 명확히 기록하고, 실제 운영 환경에 이관하여 적용한다.

제 7 조(외부용역 개발) 다음 각 호에 의거 외부 용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외부 솔루션을 도입하는 경우
2. 기타 사유로 정보화부서 자체개발이 어려운 경우

제 3 장 시 스템 운 영

제 8 조(시스템운영) 개발 완료된 정보시스템은 주관부서에서 운영·관리하며, 정보화부서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기술을 지원한다.

제 9 조(교육) 정보화부서는 본 대학교의 실무 또는 교육, 연구에 필요한 지식보급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.

제 10 조(전산자원 이용기준) 대학의 전산자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“전산자원 이용에 관한 운영세칙”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11 조(정보윤리기준) 대학내 건전한 정보이용문화와 윤리를 정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“정보윤리에 관한 세칙”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12 조(시스템 이용료) 대학의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스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1. 각 정보시스템별 이용료 산정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
2. 정보시스템 이용료 수입은 장비사용료로 적립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